

1 과제신청 기본 사항 관련**Q1-1. 통합공고 상 다수의 RFP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?**

-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동시 지원하시려는 과제의 연구 목표, 연구 내용 등 차별화가 필요합니다.

Q1-2.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기업의 연구개발기관 자격은 공고안내서(5페이지)의 기준을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,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원 가능합니다. 또한, 기업이 공동,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.

Q1-3.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Q1-4. 사전검토 주요 탈락 사례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?

- 하나의 과제에 동일 연구개발기관 중복구성(동일 법인번호)
※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법인번호가 중복되면 사전 선별 탈락
- 기업이 연구개발기관(주관·공동·위탁)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부재(**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**)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- 그 외 제안요청서(RFP)별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미충족하는 경우
※ 과제신청 전 반드시 RFP별 지원대상·필수 요구사항 등 확인 후 작성 및 제출

Q1-5. 과제 신청 완료 이후에도 수정(연구개발계획서 · 전산입력)이 가능한가요?

- 과제 신청 마감일(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) 전까지는 수정(연구개발계획서 · 전산입력)이 가능하나, 과제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
 - ※ 신청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된 과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IRIS상 주관 연구기관에서 반려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.
 - ※ 아울러, IRIS상에서 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, 해당 과제에 대한 기관담당자가 승인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접수 마감일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의 오류 및 접속지연으로 인해 접수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접수는 불가하며, 접수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리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Q1-6. 세부 과제 단위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, 제안 작업에서 다른 팀과 미리 연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

- 심사 평가 및 선정은 세부 과제별로 이루어지나 다른 과제 지원기관과 미리 협업해서 지원하는 것은 추천합니다.
- 타 세부 과제 기관과 미리 연계 협업한 것 자체에 명시적인 가산점은 없습니다.

Q1-7. 1차년도에 RFP 3-1에 선정된 연구팀이 2차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?

- 한번 선정된 연구팀은 다음 차수(2차년도, 3차년도)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 과제 수행 기간과 겹쳐있어 중복 수행이 불가합니다.
 - ※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다를 경우에는 기관이 동일하여도 신규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1-8. 3책 5공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?

- 공고 안내서(7-8P)에 신청 및 수행 제한에 나와있습니다.
-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(3책 5공) 제한 기준 적용 시점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공고 마감일 이후 4.30일이 될 것입니다.

Q1-9. 주관/공동/위탁 기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, 주관/공동/위탁 기관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요?

- 공고 안내서(13-14P)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에 나와있듯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작성합니다.

Q1-10. 과제에 지원가능한 과제체계구성이 어떻게 되나요?(일반, 컨소시엄)

- 일반형 과제체계 구성만 가능합니다. IRIS 과제체계구성을 따릅니다.

○ 일반형

단독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[IRIS 용어]

-주관연구개발기관 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-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-위탁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-연구책임자 :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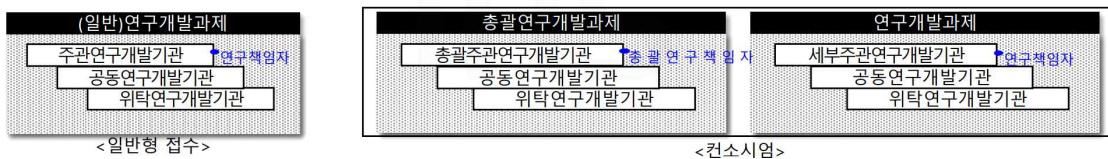
○ 컨소시엄

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공동의 연구개발계획(총괄연구개발계획)하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전체 추진체계를 일컫는 명칭 [IRIS 용어]

-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: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

-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: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

-총괄연구책임자 :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



2 과제제안요구서(RFP) 관련

Q2-1. RFP 3-1에서 3년 동안 매년 5과제를 선발하는데, 과제 시작 시기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지요?

- 현재 역할 구분은 없으며, 1차년도 개발 내용을 공개하여, 2차년도 이후 지원하는 기관이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.
- 1차년도는 독립적으로 3년간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면 됩니다.
- 다만, 일부 과제가 같은 모델을 개발한다고 제안할 수 있는데, 과제 선정 후 사업단이 조율(목적 변수 변경, 모델 변경 등)할 것입니다.

Q2-2. RFP 1-1과 RFP 3-1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누구인가요?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연구개발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향후 플랫폼을 운영할 재단 또는 기관이 기술이전을 받아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려고 합니다.

Q2-3. RFP에 나와 있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온전히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인가요?

- RFP 지원 규모에 연간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의미합니다.
- 총 연구비는 기관 유형별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(공고 안내서 13P)를 참고하여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시고, 이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추가하여 총 연구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.

4 필수 참고 사항 관련

Q4-1. 사업에 대한 추가 참고 사항이 있을까요?

-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범위는 연단위로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율합니다.
- 사업의 지속 운영과 (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) AI 솔류션의 보안 점검을 위해서 플랫폼 및 솔류션 과제는 소스 코드를 사업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(과제 결과를 github 등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사업단과 협의)
- 사업단은 긴밀한 협력을 위해 플랫폼 과제 수행기관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플랫폼 과제 수행기관은 보안 대책 레드팀을 운영하고, 데이터 보안 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.
- 공용비로 계상하는 클라우드는 검증 및 플랫폼 운영(연합학습)에 사용해야 하며, 플랫폼 및 솔류션 개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개발은 보유 장비 또는 연구비에서 각자 활용)
- 매년 우수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.